

부산광역시 사하구 아동위원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안사유

- 가. 「아동복지법」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구·군에 아동위원을 배치하여 지역 내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하고 아동복지에 필요한 원조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나. 구·군에서 아동위원을 배치하도록 규정된 바에 따라 아동위원의 위촉과 아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.

2. 관계법령 : 「아동복지법」 제6조

3. 주요골자

- 가. 아동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(안 제2조 및 제3조)
- 아동복지에 관하여 필요한 원조와 지도에 관한 사항 심의
 - 위원장 1명,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.
 - 위원장은 아동복지 업무소관 국장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
- 나. 아동위원의 임기 및 임무(안 제4조 및 제7조)
- 위촉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 - 요보호아동의 발생즉시, 구 아동복지업무 담당부서 또는 해당동에 알림
 - 관할구역내의 아동상담 및 지도를 아동복지담당공무원과 상호협조
 -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상담 및 지원, 후견인 등

4. 검토의견

□ 본 조례 제정 건은

- 아동상담지도와 요보호아동지원 등 아동의 생활상태 및 가정환경을 상세히 파악, 확인하여 효율적인 관리와 원조를 통하여 건전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바르게 성장함은 물론 정서적 안정과 심화교육에 크게 기여한다고 판단되며
- 아동유기 및 학대행위가 나날이 증가하여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비추어 시기적절한 조치라고 생각됨
- 또한 동구 등 6개구에서는 기히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중구를 비롯한 나머지 구에서도 입법예고 등 진행중에 있으며
- 특히 아동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아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, 임기와 임무 등에 관하여 규정되어 있는 점을 감안 한다면

□ 위 조례 제정 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